

특허청, 특허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행위 방지를 위한 「산업재산권 표시 요령 및 허위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계획」공고

특허청에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표시 · 광고를 함에 있어 일부업체에서 관련 권리내용과는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를 오인 · 혼동케하고, 산업재산권 사용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97년 11월부터 「산업재산권 표시요령 및 허위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그 계획의 전체를 게재하니 참고바란다.

-편집자 주-

산업재산권 표시 요령 및 허위 표시 · 광고 행위에 대한 처리계획

1. 특허등 산업재산권 표시 요령

가. 특허등 산업재산권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번호 표기

예) 특허등록 제○○○호, 실용신안등록 제○○○호, 의장등록 제○○○호, 상표등록 제○○○호

나. 특허, 실용신안등을 출원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허품”이라고 기재하여야는 아니되며, 부득이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원 상태임을 명기하고, 출원번호 그대로 표기하여야 함.

예) 특허출원 제94-○○○호, 실용신안등록출원 제95-○○○호, 의장등록출원 제96-○○○호, 상표등록 출원 제97-○○○호

* 숫자는 당해 산업재산권의 출원년도를 표시한 것임.

다. 특허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것, 또는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불납, 무효처분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것은 “특허 제○○○호” 등 관련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라.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또는 상표등록된

것을 “특허 ○○○호”라고 표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그 번호를 그대로 명기함.

마.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어느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등록 · 출원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이를 표기하여서는 아니됨.

2. 문제가 되는 허위 표시 · 광고 유형

가. 특허출원중인 물품을 출원번호 표기도 없이 단순히 “특허품”이라고 표기

나. 특허출원중인 것을 “특허 제○○○호”라고 출원번호를 특허번호로 표기

다. 특허출원하여 거절사정된 것을 “특허 제○○○호” 또는 “특허출원 제○○○호” 등으로 표기

라. 존속기간 만료 또는 특허료 불납 등으로 소멸된 것을 “특허 제○○○호”라고 표기

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또는 상표등록된 것을 “특허 제○○○호”라고 표기

바.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의 경우에 상기 “가”호 내지 “라”호와 같이 허위표시

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어느 산업

재산권에 대해서도 등록은 물론 출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또는 출원한 것으로 표기

3. 허위 표시 · 광고 유형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

가. 제2항 “가”호 내지 “바”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발시 1차에 한해 문서로 시정권고하되,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재차 허위 표시 · 광고를 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

나. 제2항 “사”호에 해당할 경우, 또는 허위표시를 한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에 고발조치

다. 허위 표시 · 광고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오기 및 기재방법상의 오류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시정을 행정지도

〈참고〉 허위표시 관련 관계법률

특 허 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중인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 ·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 ·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27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용신안법

제47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5조 내지 제220조 · 제222조 내지 제22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허위표시의 죄)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장 법

제80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장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의장등록출원중인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장등록표시 또는 의장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 ·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의장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 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 · 사용 ·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 ·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의장등록 또는 의장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84조(허위표시의 죄) ①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 표 법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 상표인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

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 상표인것 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등에 표시하는 행위

제95조(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소기업청, '98년도 월드컵상품 생산 희망기업 신청접수중

-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

중소기업청은 월드컵 관련 상품생산을 희망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월드컵 관련상품의 품질향상과 수출증진을 도모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자 오는 1월 31일까지 98년도 월드컵 상품 생산 희망기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기업은 월드컵과 관련한 각종 스포츠, 레저용품, 공예품, 기념품, 신변잡화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품질 및 기술혁신의지가 있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하는 기업 또는 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성장유

망하다고 추천한 기업에 한한다.

한편, 월드컵 관련 상품 생산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품질 및 기술력 향상 지원, 국내·외의 마케팅 및 판로지원, 자금지원심사 및 월드컵 휘장사업추진시, 인력지원시 우대, 그리고 월드컵 상품생산유망기업지정서도 발급준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 접수처에 비치한 신청서에 의해 중소기업청 생활공업과나 각 지방 중소기업청 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처는 중소기업청 생활공업과 전화번호 02)503-7925, 509-7061/2로 연락하면 된다.